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2. 11 선고 2024가단3468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A(개명 전 성명 : B)

피고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

변론 종결2024. 11. 27.

판결 선고2024. 12. 11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0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주영

별지